

「물품관리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20. 12. 21. 개정 판 (시행 2020. 12. 2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50/compare?from=372&to=104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4:54:29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물품의 관리자) ① 본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물품은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반입,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본교 비품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물품의 반입 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. ③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모든 비품은 관재팀에 사용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	제5조(물품의 관리자) ① 본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물품은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반입,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본교 비품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물품의 반입 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. ③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모든 비품은 <u>시설관리팀 관재</u> 에 사용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 <u>(개정 2020-12-21)</u>
제6조(업무관장) 본교 물품의 파악 및 분류, 취득, 보관, 처분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 관재팀에서 관장한다.	제6조(업무관장) 본교 물품의 파악 및 분류, 취득, 보관, 처분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 <u>시설관리팀 관재</u> 에서 관장한다. <u>(개정 2020-12-21)</u>
제21조(보칙)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내용의 변경·추가·삭제는 사무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으며, 관련 행정양식은 관재팀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	제21조(보칙)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내용의 변경·추가·삭제는 사무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으며, 관련 행정양식은 <u>시설관리팀 관재과</u> 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u>(개정 2020-12-21)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물품관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제6조 중 "관재팀"을 각각 "시설관리팀 관재"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관재팀장이"를 "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